

원어민 채용 계약서

수지 올리성동원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.)과 ESL AGENT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.)는 원어민강사 고용알선업무에 있어 상호 협력적인 업무관계를 체결하고, 외국인/내국인 의 고용업무에 있어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.

제 1 조 (계약목적)

본 계약의 목적은 “갑”과 “을”이 영어 강사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진행되는 업무에 있어 쌍방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는데 있다.

제 2 조 (서비스 내용)

2.1) 상기의 강사 고용알선 서비스에는 “갑”이 제시한 세부 요청에 따른 후보자 추천, 후보자 압축 선택 및 최종 단계인 채용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 포함되며, “을”로부터 제공된 서비스에 의해 성사된 채용에 대하여 “갑”이 약정된 요금을 지불한다.

2-2) 항공권 예매 및 발급과 공항 픽업관련

- (1) “갑”의 요청시 “을”은 항공권 예매를 대행한다 (항공권 비용은 “갑”이 즉시 지불한다.)
- (2) “갑”이 공항 픽업 수수료(₩100,000)를 지불할 경우에 한하여, “갑”的 피 고용인”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 공항 픽업 및 “갑”으로 인계 서비스를 제공한다.

제 3 조 (서비스 절차)

3-1) “을”은 “갑”的 구인의뢰를 접수한 후 서류심사 등을 통해 적합한 후보자들을 찾아 “갑”에게 후보자의 이력서를 제출한다.

3-2)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후보자에 관한 신상자료 및 이력서를 제출 후 “갑”은 제반 정보의 검토 후 최종 선발의 의사여부를 “을”에 통지하여야 한다.

3-3)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추천된 후보자들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며, “갑”的 요구 시 인력에 관한 정보의 제공, 면접환경을 마련하고 후보자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3-4) “을”이 추천한 후보자들 중 “갑”이 최종 선택하여 후보자와 고용계약 체결 후, 후보자가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관련 업무를 도와준다.

제 4 조 (서비스 조건)

- 4-1) “갑”은 “을”이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0 업무 관련 요청자료를 “을”에게 제공한다.
- 4-2) 상기 서류에는 “갑”的 회사에 대한 일반 정보와 후보자가 일하게 될 고용계약서가 포함되어야 한다.

4-3)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각 후보자의 세부 경력 사항을 면접에 앞서 제출한다.

4-4) “을”은 후보자 면접을 주선한다. (전화 인터뷰로 대신할 수 있다)

제 5 조 (기밀유지)

5-1) “갑”과 “을”은 계약에 관련된 제반사항의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누출할 수 없다.

5-2) 만일 “을”로부터 추천 받은 후보자를 “갑”이 직접 연락을 취하여 채용한 경우 또는 후보자가 직접 “갑”에게 연락을 취하여 채용되는 경우에도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, 이 기간은 1년 동안 유효하다.

제 6 조 (서비스 보증)

6-1) 만일 “을”을 통하여 채용된 강사가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1) 강사의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여 계약이 파기된 경우, 2) 강사의 도주 등으로 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

- (1) “갑”的 추가 고용알선 수수료의 지급 없이 후보자를 동일한 절차로 유치하여 빠른 시일에 “갑”이 채용토록 서비스를 제공한다. (단, 대체 강사에 대한 항공권, 비자 수수료 등은 “을”이 책임지지 아니한다.)
- (2) “을”이 2개월 이내에 대체 강사를 구해주지 못할 경우 “을”은 “갑”으로부터 지불 받은 고용알선 수수료 중 아래 규정에 의한 부분을 “갑”에게 반환하기로 한다.
 - 체결된 강사가 1개월 이내에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고용알선 수수료의 100%
 - 체결된 강사가 1개월-2개월 사이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고용알선 수수료의 80%
 - 체결된 강사가 2개월-3개월 사이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고용알선 수수료의 60%

6-2) 단, “갑”이 채용 계약 시 약속한 내용을 위반하여 채용자가 퇴사하게 된 경우 또는 “갑”이 해고 통보를 한 경우는 상기 제 6 조 6-1 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.

6-3) “갑”的 필요에 의해 강사가 E-2 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하여 발생되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하여는 “갑”이 모든 책임을 진다.

6-4) 강사 계약체결 후(“갑”과 피고용인이 고용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경우로써 팩스나 e-mail에 의한 계약 체결 시에도 적법한 계약체결로 본다) “갑”的 일방적인 계약파기 시 “갑”은 약정된 서비스 비용의 10%를 위약금으로 “을”에게 배상하며, “갑”이 E2 비자서류 수령 후에 계약 파기 시에는 “갑”은 서비스 비용의 30%의 위약금을 “을”에게 배상한다.

제 7 조 (서비스비용 지불방식 및 금액)

7-1) 지불시기

- (1) 피고용인이 E2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

- 고용계약 체결시(“갑”과 피고용인이 고용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경우로써 팩스나 e-mail에 의한 계약 체결 시에도 적법한 계약체결로 본다) : 서비스 비용의 10% 지불
 - 피고용인의 E2 비자서류를 모두 수령한 때 : 서비스 비용의 40%
 - 피고용인이 입국한 후 3 일 이내 : 서비스 비용의 50%
- (2) 피고용인이 E2 비자를 받지 않는 경우(예: F2 비자 또는 교포강사)
- 고용계약 체결시(“갑”과 피고용인이 고용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경우로써 팩스나 e-mail에 의한 계약 체결 시에도 적법한 계약체결로 본다) : 서비스 비용의 10% 지불
 - 피고용인이 입국한 후 3 일 이내 : 서비스 비용의 90%

단, 피고용인이 이미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수업시작일을 입국일로 본다.

7-2) 고용알선 수수료는 채용인력 1 인에 대해

금 일백만원 (₩1,000,000)으로 한다.

(공항픽업 관련 서비스는 “갑”이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, 공항픽업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금은 “갑”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.)

당사는 원어민 직업소개소 정식 협업체로서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으며, 100% 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. (대금지불 후 사업자등록 사본을 팩스송부 바람)

7-3) “을”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금지불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지급방법 : 은행계좌이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 결제

은행명 : 우리은행

계좌번호 : 1005-701-376769

수취인 : (주)이에스엘에듀케이션

제 8 조 (계약의 효력)

8-1) 본 계약은 양 사가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, “갑”과 “을”은 각각 서명 날인한 후 한 부씩 보관한다.

2014년 7월 21일

갑 :

주소 :

연락처:

담당자 : (인)

을 : (주)이에스엘에듀케이션

대표이사 : 유 선 (인)



전화번호 02-2675-0582 팩스번호 02-337-4670

주소 :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 가 121-59 당산빌딩 301 호